

수입 생강(Ginger)

1.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2006. 8. 28 ~ 8. 31
- 조사지역 : 부산, 평택, 이천, 인천, 서울
- 조사대상 : 수입업체, 중도매인, 소매상

2. 일반적 현황

가. 학술적 명칭

- 학명 : *Zingiber officinale* Roscoe
- 과명 : 생강과(*Zingiberaceae*)
- 영명 : Ginger
- 한명 : 생강(生薑, 生姜)

나. 원산지 및 분포

- 원산지는 인도, 말레이시아 등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로 추정하고 있으며, 프랑스·독일·영국·스페인·포르투갈 등의 유럽, 동·서 아프리카 지역국가, 아시아의 인도·말레이시아·중국·일본·한국 등과, 미국·멕시코·자메이카 등 북·중미대륙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음

다. 형태 및 특성

- 새양, 새양이라고도 부르며, 뿌리줄기는 다육질이며 덩어리 모양이고 빛깔은 노란색에서 밝은 갈색, 담황색 등으로 다양함. 육질은 코르크층으로 되어 있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나 긁어내면 코르크층·표피층·피아층이 모두 벗겨지고, 향긋한 냄새와 매운맛이 있음
- 매운 맛 성분은 zingerone, shogaol, gingerol 이고, 방향 성분은 zingiberol, zingiberene이 있음
- 맹아는 18℃ 이상, 습도 75%에서 잘 되고, 25~30℃의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람, 15℃ 이하에서는 생육이 좋지 못함
- 주요성분으로는 생강 100g속에 수분 81.7g, 당질12.4g, 단백질 2.2g, 섬유질 1.9g, 칼슘 20mg, 인 14.0mg, 철 1.1mg, 칼륨 316.0mg이 들어 있고, 각종 비타민(A·B₁·B₂·C), 나이아신 등이 포함되어 있음

라. 용도

- 생강은 0.25 ~ 3% 정도의 '정유'(精油)를 함유하고 있으며, 그 주성분은 진지베린(Zingiberene)이며, 정유를 추출하여 식품과 향수제조에 이용하며, 진제론(Zingerone)은 얼얼한 맛을 내는 성분임
- 약간 쓴맛이 나 대부분 건조 후 갈아서 빵·과자·카레·소스·피클 등을 만들 때 향신료로서의 이용하며, 신선생강은 요리할 때 조미용으로 사용함
- 껍질을 벗긴 생강은 끓여서 시럽에 넣어 절이기도 하고, 일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입맛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얇게 썰어 식사 중 먹기도 함
- 정과·생란 등의 음식을 만들며, 생강차·생강주의 주재료로 이용되고,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즙이나 생강차를 만들어 약으로도 사용함
- 가공용으로는 편강(片薑), 건강(乾薑), 분말차, 생강차, 향료 등으로, 한약재로는 건위(健胃), 발한(發汗), 보혈(補血), 거담(去痰)제 등에 이용함

마. 주요 품종

-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품종의 분화로 크게 *Z. majus* 와 *Z. minus*로 대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빛깔·형태·맛에 따라 구별되고, 우리나라에서는 품종분화가 거의 없어 덩이줄기의 크기와 분얼상태에 따라 소생강(小生薑)·중생강(中生薑)·대생강(大生薑)으로 구분함
 - 소생강
우리나라에 토착화되어있는 조생종으로, 섬유가 많고 수분이 적어 매운맛이 강하며 종류는 모생강·곡중·금시·정강4호 등이 있음
 - 중생강
육질이 연하며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 잎 생강용으로 사용하고, 종류는 황생강·토생강·근강 등이 있음
 - 대생강
만생종으로 주로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, 잎과 줄기가 굵고 신맛은 적으나 저장성이 약하고, 제과·마른생강의 원료로 사용함

3. 수입동향

가. 수입자유화 현황

- '93. 12월 UR협상이 타결되어 '95. 1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축산물시장도 관세에 의한 수입개방 체계로 전환되었음
- '96년말 HS코드(국제표준상품분류)기준으로 1,424개 농축산물중 1,363개가 개방(관세화)됨
- 이후 다자간 협상으로 개방품목이 확대 되어 '04년말 현재 쌀 관련 16개품목만 제외 됨 (벼, 매현미, 찰현미, 맵쌀, 찹쌀, 쇠미, 쌀가루 등)

나. 현행시장접근물량(Current Market Access)

구 분	'01	'02	'03	'04	'05	'06
물량(톤)	1,612	1,649	1,777	1,860	1,860	1,860

※ UR이행기간이 '04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'05년부터 재협상타결시 까지 '04년도 수준으로 잠정이행중임

다. 관세율(HS : 0910-10-0000)

구 분	'01	'02	'03	'04	'05	'06
기본관세율(%)	20	20	20	20	20	20
종가세율(%)	389.8	385.7	381.5	377.3	377.3	377.3
종량세(원/kg)	962	952	941	931	931	931

※ 종가세(%) 또는 종량세(원/kg)중 높은 관세액을 적용

※ UR이행기간이 '04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'05년부터 재협상타결시 까지 '04년도 수준으로 잠정이행중임

라. 수입방법

1) 국영무역품

- 관리기관 : 농수산물유통공사
- 국내 수입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MMA(최소시장접근)물량 한도 내에서 연간 수입 계획을 수립하고, 동 계획에 따라 수급상황을 감안 공개경쟁 입찰(외자구매입찰)을 실시하여 낙찰업체를 결정하고, 낙찰업체가 해당물량을 소정의 기한 내에 도입하여 공사에 인도함
 - 입찰방법 : 입찰공고 후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 입찰
 - 공고내용 : 품목, 수입물량, 도착기한, 도착항구, 원산지, 입찰방식,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, 구매규격 및 검역조건 등
- 포장규격 : 10Kg
 - 외포장 : 2중 골판지 사용 및 파라핀 왁스로 방습코팅 처리된 Carton Box로 상자 옆면에 가로 7cm × 세로 2cm정도의 손잡이 2개
 - 내포장 : Carton Box 내에는 L.LD.P.E(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) 소재로 제조된 3면봉합(가로 83cm, 세로 82cm, 두께 0.04mm)비닐을 사용, 상자는 내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상하 접합부에 테이핑
- 운송방법 : 40FT 냉장컨테이너로 운반하고, 2~3줄 단위로 중형으로 컨테이너당 20톤 이하를 적재하고, 운송과정동안 10℃유지



[외포장]



[내포장]

-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입된 생강이 국내에 도착되면 수입절차에 따라 검사를 필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창고로 운송 보관, 국내 수급동향 등을 파악하며 판매하고 있음



[운반 컨테이너]



[유통공사 비축창고 전경]



[유통공사 창고 적재 광경]

2) 수입권공매품

- 관리방법
 -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 CMA(시장접근)물량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차익금(Import Mark-up)의 일부를 농안기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고액납입 희망자 순으로 수입권을 부여하는 제도
 - 수입차익금은 판매이익금으로서 국내 가격에서 판매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, 전액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불입하여 농업투자재원으로 활용

○ 추천서 발급

- 낙찰자는 해당 물량의 전량 또는 수입건별 물량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로 제출하여야 함
- 추천신청서에는 신청물량에 대한 선하증권(순중량 표기), 상업송장, 포장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
- 추천서 유효기간은 30 ~ 90일 이내(연도 이월은 불가)



[민간 창고 적재품]



[외포장]



[내포장]



[원 강]

바. 연도별 수입 실적(국가전체)

(단위 : 톤)

구 분	'01	'02	'03	'04	'05	'06(6월)
계	19,021	15,076	11,329	11,297	11,771	2,522

* 자료 : www.kita.net/ 한국무역통계/ 품목별 수출입/품목의 수출입

- 최근 5개년('01~'05) 우리나라의 생강 수입은 대부분(97~98%)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, 나머지는 미얀마·일본에서 소량이 수입됨

4. 유통실태

가. 국영무역품

1) 관리기관(농수산물유통공사)의 판매

가) 공매

-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관내의 농수산물 도·소매상 및 실수요 업체들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함
-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인별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카드를 작성비치하며, 입찰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접수한 후 입찰 참가자격증을 발급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(지사)에서 실시하는 공매입찰에 참여함
- 입찰은 전자입찰('05.1월)시행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전자 입찰관련 인증서등록 절차를 거쳐 사인코리아(www.signkorea.com)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
-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수량에 대한 단가 입찰방법으로 시행하며, 필요에 따라 판매대상자를 제한 할 수 있음
- 입찰은 당회 입찰한도량, 1인당 한도량, 출고비축창고명, 출고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게시공고하며, 입찰참가를 등록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공매장과, 서울가락동도매시장(동화청과)에 비치된 견본(현품)을 종람한 후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마감시간 전까지 응찰하여 참여함
- 낙찰자의 결정은 유효한 입찰자로서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중에서 고가순, 물량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함

나) 상장

- 대상 : 전국 청과부류 도매시장(농협 공판장 포함)
- 도매시장상장판매는 공사의 농수산물 비축사업 세부실시요령 제68조(상장판매방법)에 의거 대상 도매시장과 입찰참가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명단, 상장품목, 수량, 판매시기, 수수료, 약정위반시 제재조항 등이 포함된 상장판매약정을 계약체결하고 시행함
- 약정이 체결된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상장이 있을시 소속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들에게 입찰사항(입찰일시, 품명, 산지, 모선명, 당일판매물량, 1인당 한도물량, 낙찰자 결정방법, 인수창고, 입찰시작 및 마감시간 등)을 공고한 다음, 입찰당일 경매대상 견본품을 종람하게 한 후 경매를 실시함
- 경매방법 : 서면입찰
 - 도매시장의 각 법인은 입찰참가자(중도매인)의 입찰서를 취합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통합정보망(AGNIS)에 입찰 내역을 입력함
 -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각 도매시장에서 공사 통합정보망에 입력한 입찰내역서를 확인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 각 도매시장별로 통보함
 - 도매시장은 낙찰 중도매인에게 통보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현물을 인수하도록 함
- 낙찰자 결정 : 고가순, 물량순으로 결정 됨
- 상장수수료 : 2.5%

다) 판매방법별 실적

(단위 : 톤, %)

구 분	'02		'03		'04		'05	
	물량	비율	물량	비율	물량	비율	물량	비율
공 매	236	34.4	-	-	525	69.7	187	30.9
상 장	450	65.6	-	-	228	30.3	418	69.1
계	686	100.0	-	-	753	100.0	605	100.0

* 자료 : '05년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편람

나. 수입권공매품

-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입 추천서를 발급 받아 수입된 물량이 항구에 도착되면 제반절차에 따라 검사 등을 필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창고에 운송보관한 후 도매상, 실수요업체 등에 공급함

다. 중·도매인

-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매등록업체,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대부분 수입생강을 입찰(공매, 상장)에 참가하여 확보하고 일부는 수입권 공매품을 구입함.
- 일부 사업규모가 큰 공매등록업체와 중도매인들이 입찰 한도물량 제한으로 소요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다른 공매등록업체, 중도매인들이 확보한 물량을 추가 구입함
- 도매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생강의 포장재 및 단량은 수입원포 10kg 상자로 대부분 거래됨
- 판매는 유통공사 비축창고에서 인수한 물품과, 수입권공매품으로 구입한 물품을 지방도매상, 대형유통업체(백화점 및 할인매장), 소매상 및 차량행상 등에게 분산함



[수입생강 포장상자]



[수입생강 충전]

라. 소매상

- 생강의 소매형태는 생강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상은 없으며 야채가게, 슈퍼마켓, 트럭행상, 대형유통업체(백화점 및 할인마트) 등 다양함
- 소매상들은 도매시장에 나가 직접 물건을 구입하며, 일부는 중도매인들로부터 직접 배달 받기도 함
- 소매상의 판매단위는 박스 단위로 판매하거나, 박스를 해포하여 g당, 탈피품 g당, 갈아서 1kg 단위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함



[원강]



[탈피된 원강]



[갈아서 포장된 생강]



[탈 피 기]



[탈피된 생강]

※ 소매상들은 판매시 저온저장을 할 수 없어 짝이 난 생강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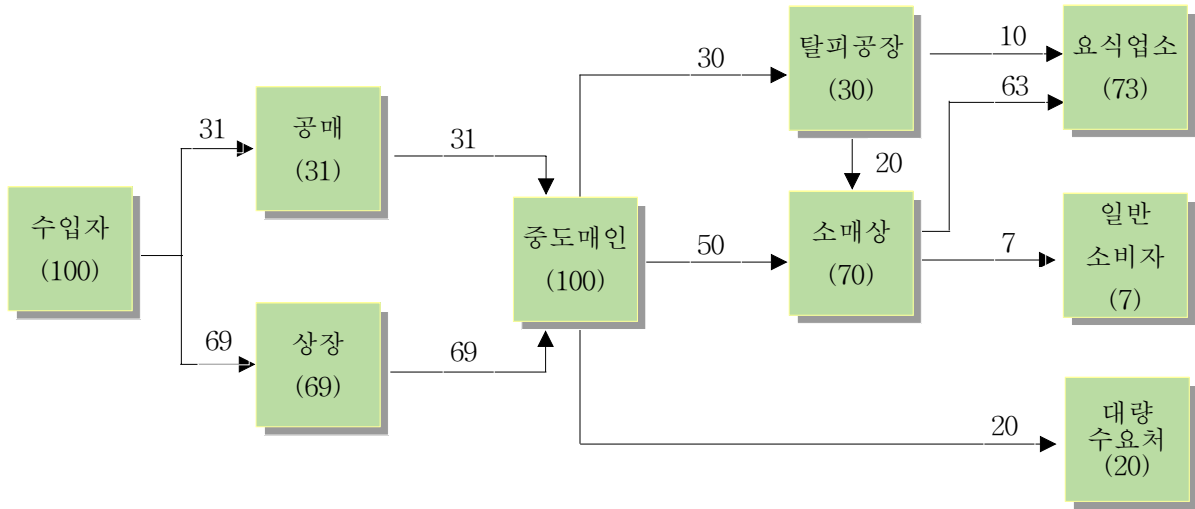


[원 강]



5. 유통경로

신선생강 (2006. 8)



6. 유통비용

(단위 : 원/kg)

구분	금액	비율	산출근기		비고	
			단위	금액		
유통공사	수입가격	722.5	30.0	톤	722,548	CFR \$705.4/톤
	관세	144.5	6.0	톤	144,510	관세20%
	부대비	139.5	5.8	톤	139,500	부두하역비 통관비 검사비 내륙운송비 등
	간접비 및 이윤	1,496.2	58.2			
상장	공급가격	2,502.7	100.0			

* 환율 : '05년 매매기준율 최고고시 환율 = 1,024.31원/US\$

수입관련 용어 해설

1. 시장접근(Market Access) 물량

UR 농산물협상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국내외 가격차인 관세상당치(TE)에 의해 개방을 할 경우,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'88~'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의 3~5% 수준인 일정물량은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, 현행시장접근물량(CMA)과 최소시장접근물량(MMA)으로 구분함

2. MMA(Minimum Market Access : 최소시장접근)

UR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의 기준년도('88~'90년)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%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, 초기년도 3%에서 최종년도 5%까지 증량하도록 합의되어 국가이행계획서(C/S)에 반영됨. 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C/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(해당품목 : 고추, 마늘, 양파, 생강)

3. CMA(Current market Access : 현행시장접근)

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%를 초과할 경우, UR 이행 기간동안 기준년도('88~'90년)의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 임(해당품목 : 참깨, 땅콩, 대두, 팥, 메밀)

4. 국영무역(State Trading)

- 일반적으로 국가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,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함
- 쌀, 보리, 고추, 마늘, 양파, 참깨, 대두 등 16개 주요농산물이 해당되며 수입이익금은 관련기금에 불입되어 농업부문에 재투자됨
- 목적은 안정적인 식량공급, 농산물 유통 및 가격조절, 소득지지, 산업발전, 수출보조, 국내시장 보호 등 광범위한 정부정책목표 달성에 있음

5. 수입권공매

민간업체가 수입부담금(수입이익금, 공매납입금)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매납입금을 최고 금액으로 제시하는 업체에게 수입권을 부여